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378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2.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우리시 사회복지직 정원 5명 증원되어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7명에서 452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.

-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증원(437명 ⇒ 442명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447명”을 “452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437명”을 “44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447명</u>으로 하며,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437명</u> 2.(생략)	제2조(정원의총수) <u>4 5 2 명</u> 1. : <u>442명</u> 2.(현행과 같음)